

의안번호	2214846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계번호	25B6698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(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) 신설	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(이하 “공영항로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(이하 “공영항로운영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2	안 제15조의3(선박건조의 지원)	국가는 <u>보조항로 또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</u> ※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(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5조의3(선박건조의 지원)	

2. 상세 사유

가. 국가보조항로 지정

- 국가보조항로는 사업성 부족으로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¹⁾하고,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여 도서주민 해상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임

○ 2025년 12월 기준, 총 29개 보조항로에 30척의 국고여객선이 운항 중

※ [참고자료] 국가보조항로 운영 현황 참고

[표 1] 국가보조항로 지정 및 운영 예산 현황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2022	2023	2024	2025	2026
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(6136-300)	13,231	16,498	19,873	20,032	21,400
-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					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나.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(안 제15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(이하 “공영항로”라 함)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(이하 “공영항로운영기관”이라 함)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를 지정하고, 이를 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공영항로 운영을 위한 육상인력 인건비 등 위탁 비용 지원, 각종 공영항로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은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1) 제15조(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(이하 "보조항로"라 한다)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(이하 "보조항로사업자"라 한다)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²⁾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는 지정될 공영항로의 수,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비용 지원 내용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다. 선박건조의 지원(안 제15조의3제1항)

- 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운영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른 선박 건조비용 지원금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조하게 될 선박 수, 선박 유형 및 규모, 국비지원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- 다만, 현시점에서는 선박건조 척수, 해당 선박의 유형 및 규모, 국비지원을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고, 현행법은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³⁾하고 있어,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15조의2제1항⁴⁾에 따라 국가보조항로 운항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선박·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여객선 건조 사업(6134-302, 2026년 85억 4,000만원)을 추진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2) 안 제15조의2(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) ⑥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15조의2(선박건조의 지원)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제15조의2(선박건조의 지원)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국가보조항로 운영 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지역	항로명	선 명	지역	항로명	선 명
인천	인천/풍·육도	서해누리	신안	북강/북강	섬사랑11
웅진	진리/울도	나래	영광	향화/낙월	섬사랑12
강화	하리/서검	강화페리	신안	웅곡/신도	섬사랑15
보령	대천/외연	웨스트프런티어	영광	계마/안마	섬사랑16
보령	오천/선촌	해랑3	여수	손죽/광도	섬사랑
서산	구도/고파	해랑2	완도	완도/덕우	섬사랑5
태안	안흥/가의	해랑5		완도/모도	섬사랑2
보령	예비선	해랑		여서/완도	섬사랑7
군산	군산/말도	고군산카훼리		이목/당사	섬사랑1
군산	군산/개야	개야카훼리		이목/남정	
군산	군산/어청도	어청카훼리		이목/서넙	섬사랑8
군산	군산/연도	(구)섬사랑6	목포	예비선	섬사랑17
신안	진리/재원	섬사랑3	통영	통영/두미	바다누리
신안	도초/우이	섬사랑6	통영	통영/삼천포	
진도	진도/죽도	섬사랑9	통영	통영/추도	한려카페리
목포	목포/율목	섬사랑10	29개 항로, 국고여객선 30척 운영 중		
		섬사랑13			